

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 ~ 10. (생략)</p> <p>② ~ ⑩ (생략)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	<신 설>	<p><b>부 칙</b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